

환경부 보도자료

'04년 4월 8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 2004. 4 배포
- ☐ 사진 없음
- ☐ 총 10 쪽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	오종극 과 장 김종률 서기관	전화 (메일)	02-2110-6837 jrkim@me.go.kr
----------------	--------------------	------------	--------------------------------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

◇ 시·도별, 시·군별 할당량 책임관리 본격화

- ☐ 환경부는 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의 근간이 되는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안) 대하여 지난 3월 26일 **환경부차관(박선숙)** 주재로 광주·대전 등 7개 시·도 **환경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협의를 완료하고, 목표수질을 확정·고시했다고 발표했다.
 - 이로써 2003년 9월 3일 고시한 낙동강수계 목표수질과 더불어 **3대강수계 목표수질이 최종 확정되었다.**
- ☐ 목표수질은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역시·도별로 책임을 분담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할 구역내 수계에 대한 목표수질을 정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오염총량을 배분하는 계획(**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기초자치단체는 할당받은 총량의 범위안에서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계획을 포함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수질개선 노력을 많이 한 자치단체는 그만큼 **지역개발이 허용되며**, 반대로 수질개선노력을 소홀하게 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의 **지역개발사업에 제약**을 받게 된다.

- 환경부는 시·도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목표수질을 과학적·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3대강 특별법 제정 이전인 2000년 2월부터 준비를 해 왔다.
 - 낙동강수계의 경우 2000년 2월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을 구성하여 목표수질(안)을 연구·검토토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적 기구인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이 1차안을 만들어 2002년 10월 시·도와 협의에 들어 갔다.
 - 그러나 상류지역에서는 목표수질 완화를, 하류지역에서는 상류지역의 목표수질 강화를 요구하며 반발함에 따라 1년 가까이 시·도 순회 설명, 전문가·환경단체 및 주민 등과의 총 13차례에 걸친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목표수질안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2003년 8월 27일 환경부 차관(곽결호) 주재 시·도 환경국장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2003년 9월 3일 목표수질(안)을 최종 확정·고시하였다.
 - 금강·영산강수계의 경우 2001~2002.11월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금강·영산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사·연구반의 연구·검토를 거쳐 2003년 12월에 목표수질 설정(안)을 마련하고 시·도 협의에 들어 갔다.
 - 그러나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낙후지역이라는 이유로**, 금강유역은 **신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개발 기대심리 등을 이유로** 목표수질(안)에 이견을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시·도 순회설명, 전문가·환경단체·주민 등과의 총 12차례에 걸친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목표수질안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2004년 3월 26일 환경부 차관(박선숙) 주재 시·도 환경국장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2004년 4월 3일 목표수질(안)을 최종 확정·고시하였다.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3대강 특별법에 따라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과학기술적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16~17명으로 구성된 전문기관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 밑에 구성

□ 1단계 오염총량제는 BOD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 시행되며, 2단계는 다른 오염물질(예: 질소, 인 등)을 대상으로 5개년단위로 실시될 예정이다.

- 낙동강수계는 금년 8월부터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시작으로 2005년 8월에는 시지역, 2006년 8월에는 군지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며,
- 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는 2005년 8월부터 광역시와 시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 8월에는 대청호·주암호 상류 유역의 군지역, 2008년 8월에는 기타 군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 이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2월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신청 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금년 6월까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

- 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의 시·도에서는 금년 7월 14일까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현재 시·도는 관할구역내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기한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 환경부는 오염총량제가 상·하류간의 합의된 역할분담을 통해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제도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자치단체가 과학·기술적 바탕 위에 수립해야 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총량관리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각 수계별로 기술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붙임 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표, 수계도)
2. 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3.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체계

〈붙임 1〉

3대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단위 : BOD₅ mg/ℓ)

수계구간명	목표수질 설정지점	목표수질
낙본A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의 낙동강 본류 지점	1.5
낙본F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경계의 낙동강 본류 지점 (성주군과 고령군 경계의 신천 합류후 지점)	2.0
금호B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경계의 금호강 본류 지점 (남천합류전)	2.4
금호C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계지점의 금호강 본류 지점 (낙동강본류 합류전 금호강본류 지점)	4.0
낙본G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 경계지점의 낙동강 본류 지점 (회천 합류전 낙동강본류 지점)	2.9
회천A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지점의 회천 본류 지점 (낙동강본류 합류전 회천본류 지점)	1.5
밀양A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의 밀양강 본류 지점	1.4
낙본L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경계의 낙동강본류 지점 (양산천 합류 후 양산시와 부산광역시 경계지점)	3.1

□ 영산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단위 : BOD₅ mg/ℓ)

수계구간명	목표수질 설정지점	목표수질
영본A	영산강본류 담양군과 광주시 북구 경계점 (전남-광주시경계)	2.1
황룡A	황룡강본류 장성군과 광주시 광산구 경계점 (전남-광주시경계)	2.2
영본B	영산강본류중 광주시와 전남 나주시 경계점 (광주시-전남경계)	5.6

□ 섬진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단위 : BOD₅ mg/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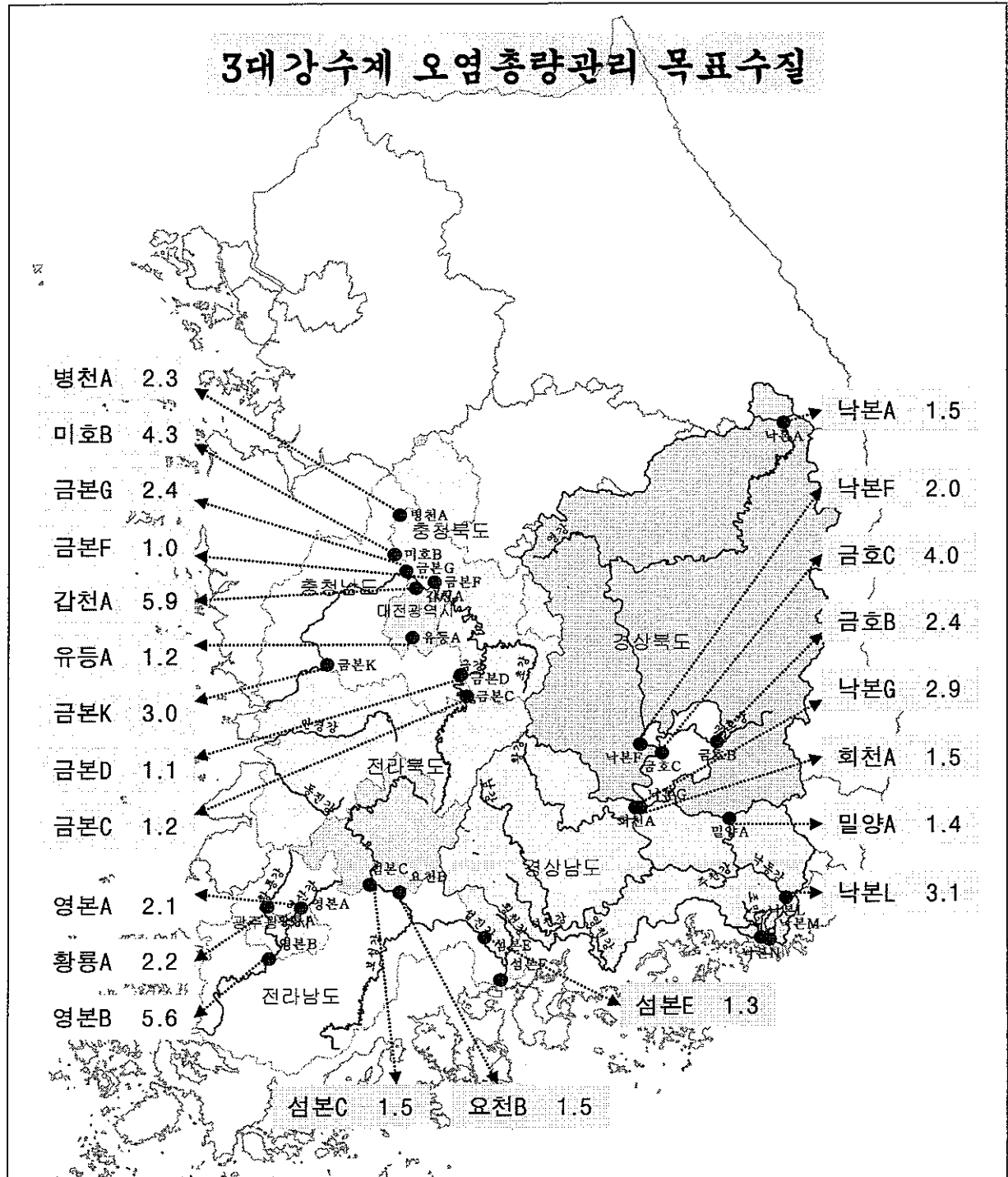
수계구간명	목표수질 설정지점	목표수질
섬본C	섬진강본류중 순창군과 곡성군 경계점 (전북-전남경계)	1.5
요천B	요천본류중 남원시 경계점후부터 섬진강 합류점 (전북-전남경계)	1.5
섬본E	섬진강본류중 순천시와 하동군 억양면과 하동읍 경계점 (전남-경남경계)	1.3

□ 금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단위 : BOD₅ mg/ℓ)

수계구간명	목표수질 설정지점	목표수질
금본C	금강본류중 무주군과 금산군 경계점 (전북-충남경계)	1.2
금본D	금강본류중 금산군과 영동군 경계점 (충남-충북경계)	1.1
금본F	금강본류중 보은군과 대전광역시 경계점 (충북-대전시경계)	1.0
유등A	유등천본류중 금산군과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점 (충남-대전시경계)	1.2
갑천A	갑천본류중 대전광역시와 청원군 경계점 (대전시-충북경계)	5.9
금본G	금강본류중 청원군과 연기군경계점 (충북-충남경계)	2.4
병천A	병천본류중 천안시와 청원군 경계점 (충남-충북경계)	2.3
미호B	미호천본류중 청원군과 연기군 경계점 (충북-충남경계)	4.3
금본K	금강본류중 부여군과 익산시 경계점 (충남-전북경계)	3.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붙임 2〉

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 총량제의 의의

- 오염총량관리제도는 용수이용 목적과 유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만족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획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수립하여 유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써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향상 시켜 나가는 핵심적 제도이다.
- 기존 농도 규제로는 오염부하량의 양적 증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총량관리가 필요

□ 총량제 시행개요

- 시행시기
 - I 단계는 : 2004.8~2010년
 - 낙동강 : 광역시지역('04.8월), 시지역('05.8월), 군지역('06.8월)
 - 금강·영산강 : 광역시·시지역('05.8월), 대청호·주암호 유역 군지역('06.8월), 기타 군지역('08.8월)
 - II 단계 : 2011~2015년 (5년), 이후 5년 단위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

수계	시·도 경계 목표수질 고시	시·도 관할 목표수질 공고	기본계획 승인신청	오염총량 시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광역시·시·군
낙동강	2003.9.3 완료	'04.4~5월 ※ 부산시 낙동M·낙동N : 2004.3.4 공고	부산: '04.3.9신청 대구: '04.2.27신청 경남·북·강원 : '04.4월(예정)	부산·대구: '04.8.1 시지역: '05.8.1 군지역: '06.8.1
금강· 영산강	2004.4.3 완료	'04.7.14이전	'04.7.14까지 ※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	광역시·시지역 : '05.8.1 대청·주암호상류군지역 : '06.8.1 군지역: '08.8.1

- 대상물질
 - I 단계는 BOD
 - II단계 이후는 조사·연구반의 조사·연구를 거쳐 T-N, T-P 등 확대
- 기준유량
 - I 단계는 10년 평균저수량
 - II단계는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조사·연구 및 유량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유량 설정
- 대상지역
 - 목표수질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 (처음 1회)

〈붙임 3〉

